# 2015년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 I. 평가 개요

#### 1.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일당 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수가 적용에 따라 자원 투입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기관수 및 의료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 ※ '14년 말 기준 1,337기관, 입원 진료비 4조 7,300억원 (각각 '08년 대비 1.9배, 약 3.5배 증가)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추구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계획함 (200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발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5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료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요양병원 간 질적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기관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 및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 추구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2. 추진 경과

- 2008. ~ 2009. 1차년도 적정성 평가 (2008년 7~9월 진료분)
- 2009. ~ 2010. 2차년도 적정성 평가 (2009년 10~12월 진료분)
- 2010. ~ 2011. 3차년도 적정성 평가 (2010년 10~12월 진료분)
- 2012. ~ 2013. 4차년도 적정성 평가 (2012년 1~3월 진료분)
- 2013. ~ 2014. 5차년도 적정성 평가 (2013년 7~9월 진료분)
- 2015. 1~6월 5차년도 평가결과 하위20%이하기관 입원료가산 등 적용제외
- 2015. 2~5월 6차년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의학회, 관련단체등 의견수렴
- 2015. 4~6월 전문가자문회의 3회 개최 (6차년도 평가지표 등 평가기준 논의)
- 2015. 6월 전문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적정성평가 관련 간담회 개최
  - 2015년도(6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세부기준 설명 및 의견공유

# Ⅱ. 평가 세부계획

### 1. 평가대상

#### 가. 대상기관

-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15년 10월 전 개설하여 12월 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2015.5.31. 기준 개설 기관수는 1,342기관 임

(단위: 기관)

지역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관수	1,342	106	184	61	64	42	51	43	280	27	41	73	82	65	108	100	8	7
(%)	(100.0)	(7.9)	(13.7)	(4.6)	(4.8)	(3.1)	(3.8)	(3.2)	(20.9)	(2.0)	(3.1)	(5.4)	(6.1)	(4.8)	(8.0)	(7.5)	(0.6)	(0.5)

### 나. 대상 기간

○ 2015년 10월 ~ 12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입원 진료분

# 2. 평가기준

- 모니터링 지표 포함 총 37개(5차년도 대비 2개 증가)
  - 삭제 3개, 모니터링 추가 5개, 모니터링으로 변경 2개, 보완 4개
  - ※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개선

# - 2015년도(6차) 평가지표

부문	영역	지표명	비고
	의료	○ 의사 1인당 환자수	
	인력 (3)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가호이려(가호시, 가호조묘시) 1이다 회지스	
구조	(0)	○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부문		│○ 약사 재직일수율	
(9)	필요	○	
(-)	인력 (6)	○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0)	○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율	제외대상 보완
	과정 (5)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 당뇨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진료		○ 매월 체중측정 환자분율	-11.01-11.11.1.01
부문		○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제외대상 보완
(13)	결과	○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8)	○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 직용에 직의된 된지분별_고되답문   ○ 욕창 개선 환자분율_고위험군	
		○ 피렴 발생률	
		│○ 페럼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 ○ 입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전문재활치료군)	
		○ 장기입원(361일 이상) 환자분율	
		○ 7일 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모니	터링	○ 중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율	
(1	5)	○ 요실금, 유치도뇨관 삽입환자 중 배뇨조절 프로그램 실시 환자분율	
		○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추가
		○ 방밖으로 나오기 개선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추가
		○ 전문재활치료 180일 이상 입원 환자분율	추가
		○ 간호인력의 이직률	구조자표→모니터링
		○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결과표→모나테링 고위험군 보완

<sup>※</sup> 평가기준 개선내용: 붙임 1 참조

<sup>※</sup>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2 참조

### 3. 평가 방법

관

단

위

#### 가. 조사내용 및 자료수집

# 조 사 내 용 구분 ○ 인력 현황 - 의사 등 의료인력, 물리치료사 등 필요인력 기

- 구성 · 재직여부 등
- 의료인력·물리치료사 당 환자수
- ※ 인력 차등제 미신고 기관은 의사최저 등급의 환자수(60명)을 적용

#### 자 료 수 집

#### ○ 구조부문(의료 · 필요인력)

- 자료원: 요양기관 시설·장비 현황(변경) 자료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자료
- 요양기관 시설·장비 현황(변경)자료는 2016년 1월 말까지 신고된 자료를 수잡하여 평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자료는 4/4분기 인력현황(신고현황)으로 평가

# 환 자 단 위

#### ○ 진료비 청구현황

- 수진자 현황, 환자분류군 구성
- 진료비현황, 입원현황
- 환자의 임상적·기능적 상태 등
  - 신체기능상태, 배설기능상태, 피부상태, 영양관리, 통증
  - 인지기능검사, 당뇨질환 관리
  - 폐렴 발생·치료현황
  - 전문재활치료 실시 현황 등

#### ○ 진료부문(과정·결과)

- 자료원: 진료비청구명세서 및 화자평가표는 2016년 2월 심사결정 분까지 수집
  - 환자평가표는 심사결정 내역으로 평가
  - ※ 2015년 10~12월 진료분

# 나. 평가방법

- 기관별 지표 값에 따라 절대평가(1~5점으로 표준화) ※ 평가지표별 표준화 방법: 붙임 3 참조
- 평가지표별 전체결과 및 요양병원 기관별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표준화점수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가중치 변경여부 추후 검토 예정(5차년도 가중치: 구조 5.0, 진료 5.0) ※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분할 및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5등급)

### 4. 평가결과의 적용 및 활용

- 요양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 제공
  - 전체 및 동일 병상규모의 평균값과 평가등급을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정부에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 구조 및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인력차등제에 의한 입원료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 제외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6호(2009.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2015.2.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04호(2010.8.31)
      -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가에서 가산 지급하는 등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국민 홍보 및 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 의료수요자에게 평가등급, 요양병원의 구조 및 진료의 질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
-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 학회 차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부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공

# 5. 향후 추진일정

○ 2015년 7월 평가 세부 추진계획 공지

○ 2015년 8월 ~ 9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실시

○ 2016년 10월 평가결과 도출

○ 2016년 11월 6차 평가결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보고)

○ 2016년 12월 ~ 2017년 2월 사전통지 및 제출의견 검토(평가결과 환류대상 기관)

○ 2017년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2017년 4월 ~ 9월 평가결과 환류(수가연계)

### < 향후 추진일정 >

	2015년						20	16년	I			2017년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9월
평가대상기간																
평가 세부 계획 공지																
전국설명회 및 추기설명회 개최																
평가자료 수집																
평가자료 점검 및 구축																
평가자료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의평조 심의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제출의견 검토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환류 적용																

※ 세부 추진 일정과 추진 내용은 정부정책 및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평가기준 개선내용

부문	지표명	개선내용			
과정	○ 65세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검사 실시환자분율	○ 제외대상 보완 ①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이상인 경우 → 혼수			
	- 2시단시단2 -	② 혼수상태이거나 섬망이 있으면서 '기관 절개관 관리'를 하는 경우 → '기관절개관 관리'를 하는 경우			
결과	○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치매환자군/ 치매환자제외군)	○ 제외대상 보완  - 전월 평가에서 10가지 ADL의 값이 모두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이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우			
		→ 전월 평가에서 8가지이상 ADL의 값이 모두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 인함'이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우			
	○ 패혈증 발생률				
	○ 패혈증 환자당 평균 치료일수	○ 삭제			
	○ 진료비 고가도 지표				
	○ 간호인력의 이직률	○ 구조지표 → 모니터링지표로 변경			
모니	○ 요실금환자분율_ 저위험군	○ 결과지표 → 모니터링지표로 변경			
터링		○ 고위험군 보완: 척수손상 추가			
	○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 방밖으로 나오기 개선 환자분율 (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 지표 추가			
	○ 전문재활치료 180일 이상 입원 환자분율				
○ 향후 환자평가표, 청구명세서 개정 후 반영 가능 (8개 지표)		○ 세부기준 보완(4개 지표) - 제외대상: 65세이상 노인중 입원시 MMSE 검사 실시환자분율(청력 및 시력장애),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_치매환자군/치매환자 제외군(근위축성측삭경화증) - 고위험군: 요실금환자분율(신경인성방광고위험군에 추가)			
		○ 지표 추가(4개 지표) - 유치도뇨관제거율, 집요양시설 퇴원환자분율, 원내약물 투여비율, 기본물리치료실시환자분율			
_ 으요	양병원수가 개정 후 반영 가능한 지표(1개 지표)	○ 지표추가: 환자분류군 상대 비율			

# 붙임 2.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 1) 구조 부문(9개)

영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산 출 식	비고
	의사 1인당 환자수	○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의사 1인당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의사수	
의료 인력 (3)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수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 1인당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 물리치료실이 있으면서,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물리치료사 1인당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물리치료사수	
	약사재직일수율	○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약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대상기간 동안의 약사의 재직일수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100	
필요	방사선사(방사선촬영 장비 포함) 재직일수율	<ul><li>대상기간 동안 방사선촬영 장비가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방사선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li></ul>	대상기간 동인의 방사선사의 재직일수 대상기간 동인의 전체 일수 ※ 방사선 촬영장비: c-arm 또는 골밀도 검사 장비만 있는 경우는 방사선 촬영장비가 없는 것	
<sub>필요</sub> 인력 (6)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 대상기간 동안 임상 검사실이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임상 병리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으로 봄  대상기간 동안의  임상병리사의 재직일수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시회복지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대상기간 동안의 사회복지사의 재직일수 ×100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의무기록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대상기간 동안의 의무기록사의 재직일수×100 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주 1. 대상기간: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sup>2.</sup> 인력현황: 2015년 4/4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현황 기준

# 2) 진료 부문(13개)

영역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율	○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평가에서 MMSE 검사를 실시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혼수 - '기관 절개관 관리'를 하는 경우	입원 시 평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u>MMSE검사를 실시한 환자</u> ×100 65세 이상 입원 환자	보완
과정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을 (고위험군/저위험군)	<ul> <li>○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분율</li> <li>-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li> <li>1. 변실금 항목이 '조절 못함'인 경우</li> <li>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li> <li>3.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이상인 경우</li> <li>4. 사지마비, 하지마비, 척수손상인 경우</li> <li>- 저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li> <li>○ 제외대상</li> <li>-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li> <li>- 저위험군 중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전원된 경우 증빙자료(요역동학검사 등으로 실시한 방광내압검사 결과지)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함을 증빙한 경우</li> <li>① 반복적인 요폐로 인해 방광근의 기능이 소실된 acontractile neurogenic bladder (무수축성 신경인성방광),</li> <li>② 항콜린제 등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방광내압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li> </ul>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중 ×100 고위험군(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당뇨환자 중 HbA1c검사 실시 환자분율	○ 당뇨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검시를 실시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해당 월 평가가 입원 평가인 경우	최근 1년 동안 <u>HbA1c검사를 실시한 환자</u> ×100 당뇨 환자	
	매월 체중측정 환자분율	○ 매월 환자평가 시 체중을 측정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혼수 및 와상 환자	제중을 측정한 환자 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100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치매환자군/ 치매환자제외군)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된 환자분율 - 감퇴: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증가한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2 이상 증가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1. 전월 평가에서 8가지이상 ADL의 값이 모두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이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감퇴된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 (치매가 아닌 환자)	제외대상 보완

영역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인 경우  - 저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 평가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결과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1.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개수가 늘어난 경우  2.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 단계가 심해진 경우	전월 평가에 비해 해당 월 <u>평가에서 욕창이 악화된 환자</u>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sup>×100</sup>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 (치매환자군/ 치매환자제외군)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9.방밖으로 나오기」 항목이 감퇴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전월 평가에서 ADL 중 '9.방밖으로 나오기' 값이 '전적인 도움' 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이어서 더 이상 나삐질 수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9.방밖으로 나오기」항목이 전월보다 감퇴된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치매가 아닌 환자)	
	욕창 개선 환자분율_고위험군	<ul> <li>○ 전월에 비해 욕창이 개선된 환자분율</li> <li>-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li> <li>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인 경우</li> <li>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인 경우</li> <li>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 안함' 인 경우</li> <li>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 거나 '행위발생 안함' 인 경우</li> <li>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 거나 '행위발생 안함' 인 경우</li> <li>- 욕창의 개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li> <li>1. 전월에 욕칭이 있던 상태에서 총개수가 줄어든 경우</li> <li>2. 전월에 욕칭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단체가 낮아진경우</li> <li>○ 제외대상</li> <li>1.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는 환자</li> <li>2.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한 경우</li> </ul>	전월 평가에 비해 해당 월 평가에서 욕창이 개선된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 3) 모니터링 부문(15개)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간호인력의 이직률	○ 대상기간 동안의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병동 근무 간호인력 이직률	대상기간 동안 재직했던 모든 간호인력수 X 100 -100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수	구조지표 → 모니터링 지표로 변경
폐렴 발생률	<ul> <li>○ 대상기간 동안 입원하고 있는 전체 환자 중 폐렴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li> <li>○ 제외대상</li> <li>─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 기간 내 재발 시에는 포함)</li> </ul>	대상기간동안 폐렴이 발생한 건수의 합 대상기간동안 입원중인 전체 환자의 폐렴 치료기간을 제외한 입원일수의 합	
폐렴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ul> <li>○ 대상기간 동안 폐렴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평균 폐렴 치료 일수</li> <li>○ 제외대상</li> <li>1.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기간 내 재발 시에는 포함)</li> <li>2. 폐렴 치료기간 중 전원·사망한 환자</li> </ul>	대상기간 동안 폐렴 발생 환자별 폐렴 치료일수의 합 대상기간동안 폐렴이 발생한 환자수의 합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_전문재활치료군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에서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 - 개선: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감소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1. 전월 평가에서 ADL 10개 문항이 모두 '완전자립' 인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개선된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전문재활 치료군 환자  • 전문재활치료군: 환자평가표 K2 "지난 7일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수"가 2 이상인 경우	
장기입원 환자분율	<ul> <li>○ 대상기간 동안 입원환자 중 361일 이상 입원한 환자분율</li> <li>○ 제외대상</li> <li>─ 낮병동 입원환자, 한방입원환자, 치과입원환자</li> </ul>	361일 이상 입원 환자 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 ×100 ▶ 361일 이상 입원환자: 일당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코드 첫째자리가 "7"로 청구된 환자	
7일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 대상기간 동안 입원환자 중 7일 미만 입원 환자분율 ○ 제외대상 - 낮병동 입원환자, 한방입원환자, 치과입원환자	7일 미만 입원환자 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 ×100	
5%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 전월에 비해 체중이 5%이상 감소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혼수 및 와상 환자 - 비만환자(전월 체중이 73kg 이상인 경우)	전월에 비해 5%이상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 있는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받은 환자 중 체중 결과가 있는 환자  ▶ 5%이상 체중감소: (전월 평가 체중 - 해당 월 평가체중) > 전월평가체중 × 0.05	
중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율	○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분율 - 중증도 이상의 통증: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b.증증도의 통증: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남 2. b.증증도의 통증: 매일 통증이 있음 3. c.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남 4. c.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매일 통증이 있음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 ×100 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요실금, 유치고관 십일 환자 중 배노조절 프 로그램 실시 환자분율	○ 요실금 및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중 배뇨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환자분율 - 요실금: 소변조절상대가 '자주실금', '조절못함'인 경우 - 배뇨조절 프로그램: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환자평가표 E.배설기능/3.환자에게 실시하는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기재 내역)	배뇨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환자 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중 요실금이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요실금 환자분율 _저위험군	○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 중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지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일상 생활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이면서, 단기 기억력이 '이상 있음'인 경우) 2. 이동관련 ADL-체위변경하기(또는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3. 척수손상인 경우 ○ 제외대상 1. 해당 월 평가가 입원 평가인 경우 2.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이상인 경우 3.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요루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 평가에서 요실금이 있는 환자 해당 월 평가를 실시한 환자 중 고위험군을 제외한 환자	결과지표 → 모니터링 지표로 변경 고위험군 보완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치매환자군/치매 환자제외군)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 - 개선: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감소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1. 전월 평가에서 10가지 ADL의 값이 모두 '완전 자립'인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개선된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치매가 아닌 환자)	추가
방밖으로 나오기 개선 환자분율 (치매환자군/치매 환자제외군)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9. 방밖으로 나오기」 항목이 개선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전월 평가에서 ADL 중 '9. 방밖으로 나오기' 값이 '완전자립'인 경우	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9.방밖으로 나오기」 항목이 전월보다 개선된 환자 *100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치매가 아닌 환자)	추가
전문재활치료 180일 이상 입원 환자분율	○ 대상기간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군에서 180일 이상 입원 환자분율 - 전문재활치료군: 환자평가표 K2 '지난 7일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수'가 2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 낮병동입원환자, 한방입원환자, 치과입원환자	180일 이상 입원 환자 ×100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재활치료군 환자 ▶ 180일 이상 입원환자: 일당 정액수가 및 요앙병원 입원료 산정코드 첫째자리가 '6' 또는 '7'로 청구된 환자	추가

주 . 대상기간: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2월 31일(단, 간호 인력의 이직률은 2015년 7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붙임 3. 평가지표별 표준화 방법

# 1) 구조부문 각 지표별 표준화 방법

구조부문				표준화방법
영역	지표	지표형태	점수	지표별 구간 (이상~미만)
			5	30명 미만
			4	30명 ~40명
	의사 1인당 환자수	비	3	40명 ~50명
			2	50명 ~60명
			1	60명 이상
			5	9명 미만
			4	9명 ~ 12명
의료인력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	3	12명 ~ 15명
			2	15명 ~ 18명
			1	18명 이상
			5	4명 미만
			4	4명 ~5명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비	3	5명 ~6명
			2	6명 ~7명
			1	7명 이상
			5	40명 미만
			4	40명 ~80명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비	3	80명 ~ 120명
			2	120명 ~ 160명
필요인력			1	160명 이상
글포근릭	약사 재직일수율	비율	5	80% 이상
	방사선사(방사선촬영장비 포함) 재직일수율	비율	4	60%~80%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비율	3	40%~60%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비율	2	20%~40%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비율	1	0~20%

<sup>※</sup> 구조부문 지표별 표준화 방법: '10년도 평가부터 동일하게 적용

# 2) 진료(과정・결과)부문 각 지표별 표준화 방법

- 평균을 중간점수로 (표준화 점수 3점) 구간을 설정

=	구분		지표별 표준	화구간 (이상~미만)	
	표준화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당뇨환자 중 HbA1c검사 실시	매월 체중측정
	점수	고위험군	저위험군	환자분율	환자분율
과정	5	0~8%	0.5% 미만	100%	95% 이상
영역	4	8~16%	0.5~1.5%	95 ~ 100%	90~95%
	3	16~24%	1.5~2.5%	90~95%	85~90%
	2	24~32%	2.5~3.5%	85~90%	80~85%
	1	1 32% 이상 3.5% 이상		85% 미만	80% 미만

Ξ	구분	지표별 표준화구간 (이상~미만)							
	표준화 점수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생긴 환자분율	방밖으로 니 환자	욕창 개선 환자분율			
		치매환자군	치매환자제외군	고위험군	치매환자군	치매환자제외군	고위험군		
결과	5	0~2%	0~1.5%	0~0.25%	0~1.5%	0~1%	40% 이상		
영역	4	2~4%	1.5~3.5%	0.25~0.5%	1.5~3%	1~2%	30~40%		
	3	4~6%	3.5~5.5%	0.5~0.75%	3~4.5%	2~3%	20~30%		
	2	6~8%	5.5~7.5%	0.75~1%	4.5~6%	3~4%	10~20%		
	1	8% 이상	7.5% 이상	1% 이상	6% 이상	4% 이상	10% 미만		

# - 지표값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간격으로 구간을 설정

구 분	지표별 표준화구간 (이상~미만)		
표준화점수	과정영역	결과영역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생긴 환자분율 저위험군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 고위험군
5	90% 이상	0%	0%
4	85~90%	0~1%	0~2%
3	80~85%	1~2%	2~4%
2	75~80%	2~3%	4~6%
1	75% 미만	3% 이상	6% 이상

<sup>※</sup> 진료부문 지표별 표준화 방법: '13년도 평가부터 지표별 구간을 설정하여 1~5점으로 표준화함.